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심사보고

1. 심사보고

가. 제안일자 : 2002. 1. 10

나. 제 출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2. 1. 1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2. 1. 1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 주민협의체 선정이유

○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삼정동폐기물소각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위

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직·간접영향권(부지 경계선으로 300m 아내)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시의원, 전문가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되어 시의회에 주민협의체 대표 6인과 시의원 2인을 선정 요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선정요구인원 : 8인(주민 : 6인, 시의원 : 2인)
2. 자격요건(도면 : 별첨#1)

   오정구 삼정동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 300m 이내 거주자
3. 근거법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주민협의체의 시의원 2인을 1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추후 검토하겠음
○ 현재 위원 중 금번 선정요구에 제외된 자가 있는가?	○ 전년도 위원 중 제외된 자는 없으며, 1명이 늘었음
○ 법에 몇 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가?	○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음
○ 11인으로 되어 있으면 11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는가?	○ 그렇게 하겠음
○ 동일인이 협의체 대표를 몇 번 할 수 있는가?	○ 법에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첨부서류

○ 명단 1부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주민협의체대표 선정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요경력	주 소	연 락 처	비 고
박 노 설	50. 6. 28	남	시의원	삼정동 316－17	673－2058	시의원
김 효 자	59. 12. 26	여	주 부	삼정동 276－38		시 민
이 연 리	55. 4. 10	〃	〃	삼정동 275－1	672－2146	〃
이 성 자	64. 10. 15	〃	〃	삼정동 283－15	672－0701	〃
서 은 길	49. 7. 3	〃	〃	삼정동 276－6	672－3975	〃
박 궁 자	44. 7. 1	〃	〃	삼정동 274－4	684－7086	〃
황 화 자	44. 5. 4	〃	〃	삼정동 285－10	672－4296	〃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

의안번호	제560호
의결년월일	2002. 1. 19 (제93회)

제출년월일 : 2002. 1. 1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주민협의체 선정이유

○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삼정동폐기물소각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직·간접영향권(부지 경계선으로 300m 이내)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시의원, 전문가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되어 시의회에 주민협의체 대표 6인과 시의원 2인을 선정 요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선정요구인원 : 8인(주민 : 6인, 시의원 : 2인)
2. 자격요건(도면 : 별첨#1)

   오정구 삼정동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 300m 이내 거주자
3. 근거법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

주민협의체선정 규정 및 임무

1.주변현황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 300M이내 주택 1,300세대 존치

2. 대표선정기준

○ 선정인원 : 8인 (주민 : 6인, 시의원 : 2인)

○ 임　　기 :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

3. 구성방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거주자 중에서 선정

4. 임 무

선정된 주민협의체 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권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음.

5. 폐기물소각시설주변지역 거주현황 : 별첨 # 1

6. 주민협의체 대표 선정 승낙서 (안) : 별첨 # 2

주민협의체대표 선정 승낙서 (안)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상기 본인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 제6조1항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삼정동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대표로 선정됨을 승낙 합니다.

2002년　　월　　일

위 본인　　(인)

부천시 의회의장　귀하

첨부 #1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삼정동소각장) 주변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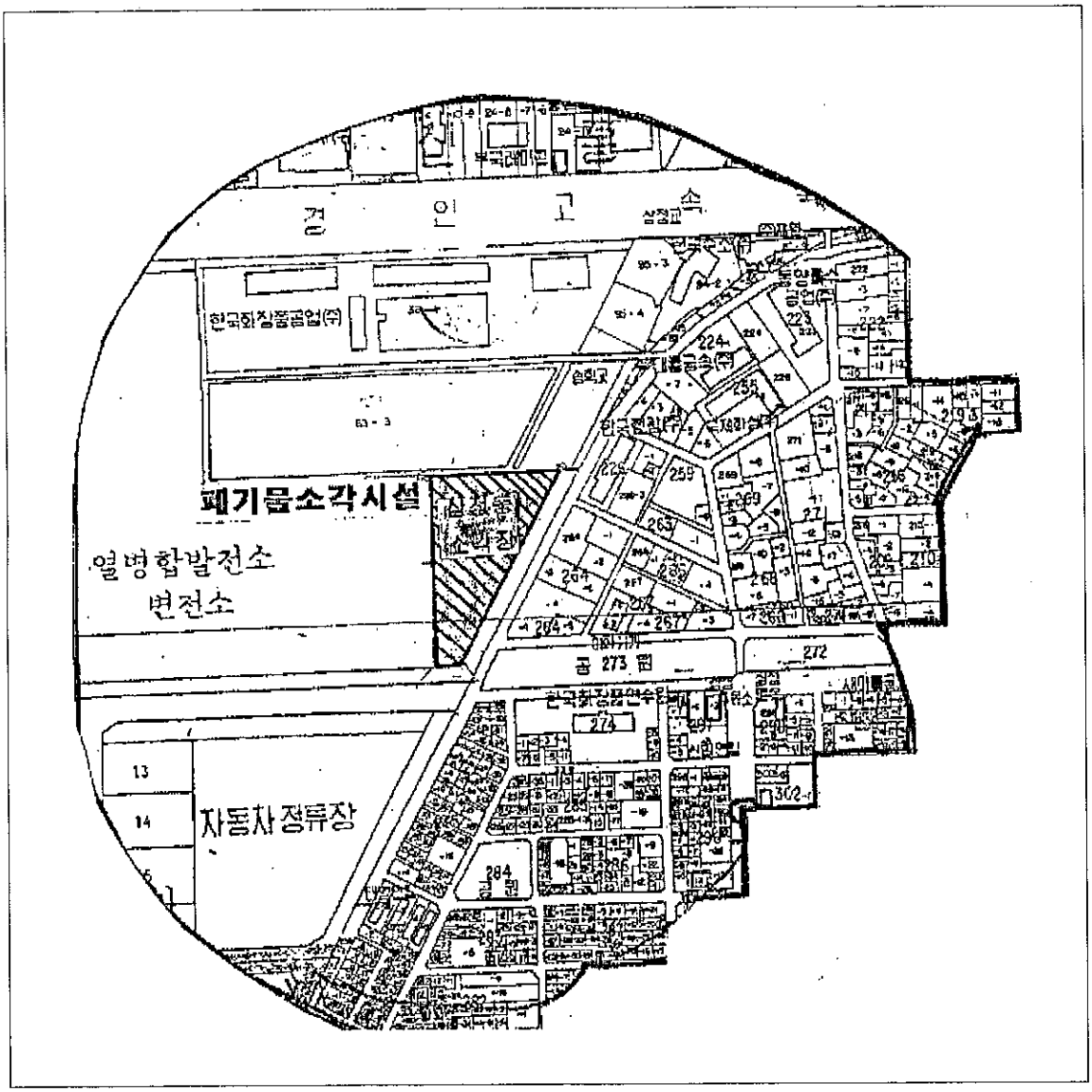

주민지원협의체구성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등)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실시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제8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폐기물소각시설	
조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이상	21인이내	1일처리능력300톤이상	15인이내
100만제곱미터미만	15인이내	1일처리능력300톤미만	11인이내

2.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구성한다. 다만, 정원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 의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비고 : 1.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2.주변영향지역 및 폐기물매립시설 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이내,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에 해당시·군·구의회의원 각 4인과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한다.

신 흥 동

정보통신망

우/ 부천시 오정구 내동 10-2번지 /전화:(032) 672-8014 /FAX:(032) 680-2707
신흥동 동장문병섭 주무 김영욱 담당자 전남수 e-mail: @bucheonsi.com
http://www.bucheonsi.com

문서번호 신흥 67510-1747
시행일자 2001.12.27 (1년)
공개여부 (공 개)
(경유)
수 신 부천시장
참 조 청소사업소장

선람	소장	이 12/27	지시		
접수	입자 시간	2001.12.27 오전 11:55	결재·공람	팀장	12/27
	번호	12535			
처리과		청소사업소			
		12/27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

1. 청소67510-2822(2001.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삼정동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및 주민협의체 대표 선정승낙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삼정동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1부.
2. 주민협의체대표 선정 승낙서 6부(별도송부). 끝.

신 흥 동

수신처:

삼정동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이 연 리	550410－2408736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5－21	
황 화 자	440504－2254227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5－10	
서 은 길	490703－2254221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6－6	
박 궁 자	440701－2254227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4－4	
김 효 자	591226－2457218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6－38	
이 성 자	641015－2323535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3－15	

주민협의체대표 선정 승낙서

성 명 : 이 연리, 주민등록번호 : (550410 - 2408736)

주 소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5-21.

상기 본인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삼정동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대표로 선정됨을 승낙합니다.

2001년 12. 월 24 일

위 본인 이 연리 (인)

부천시장 귀하

주민협의체대표 선정 승낙서

성 명 : 황화자 주민등록번호 : (590804-2254227)

주 소 오원구 삼정동 286-10

상기 본인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삼정동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대표로 선정됨을 승낙합니다.

2001년 12월 24일

위 본인 황화자 (인)

부천시장 귀하

주민협의체대표 선정 승낙서

성 명 : 서 은 길 주민등록번호 : (490103 - 2054221)

주 소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6-6 호

상기 본인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삼정동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대표로 선정됨을 승낙합니다.

2001년 12 월 24 일

위 본인 서 은 길

부천시장 귀하

주민협의체대표 선정 승낙서

성　명 : 박 공 자　　주민등록번호 : (440701 2254227)

주　소 오정구 삼정동 274－9

상기 본인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삼정동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대표로 선정됨을 승낙합니다.

2001년 12 월 24일

위 본인 박공자 (인)

부천시장　귀하

주민협의체대표 선정 승낙서

성 명 : 김 [illegible] 주민등록번호 : ([illegible] - [illegible])

주 소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illegible]

상기 본인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삼정동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대표로 선정됨을 승낙합니다.

2001년 12 월 [illegible] 일

위 본인 김 [illegible]

부천시장 귀하

주민협의체대표 선정 승낙서

성 명 : 이 성자 주민등록번호 : (641015 - 2323535)

주 소 부천 오정구 삼정동 293-15 17/3

상기 본인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삼정동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대표로 선정됨을 승낙합니다.

2001년 12 월 24일

위 본인 이 성자 (인)

부천시장 귀하